

水道施設の 清掃 및 衛生管理 등에 관한 規則

制定 1994. 9.13 總理令 第463號

第 1 條 目 的

第 2 條 衛生上의 措置

第 3 條 貯水槽

第 4 條 貯水槽清掃業의 人力·施設의 裝備
基準

第 5 條 營業의 申告 등

第 6 條 清掃 및 衛生點檢

第 7 條 清掃 및 衛生點檢의 代行

第 8 條 清掃 및 衛生點檢의 記錄·保管

第 9 條 防鏽濟의 使用制限

第 10 條 管理狀態의 點檢

第 11 條 營業停止의 處分基準

附 則

水道施設の 清掃 및 衛生管理 등에 관한 規則

제정 1994. 9.13 總理令 第463號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수도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 21조 내지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등 수도시설의 소독·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위생상의 조치)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음용수의 오염을 방지할 것
2.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

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

3. 수도전에 있어서의 음용수의 잔류염소가 항상 0.2밀리그램/리터(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.5밀리그램/리터)이상 이 되도록 할 것. 다만, 병원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0.4밀리그램/리터(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.8밀리그램/리터)이상 이 되도록 할 것

제 3 조(저수조)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(이하 “대형

건축물등”이라 한다)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저수조청소업의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) 법 제2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을 별표 2와 같다.

제 5 조(영업의 신고등) ①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(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2. 시설 및 장비명세서
3.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원본(변경신고에 한한다.)

②시장·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청소 및 위생점검) ①대형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1월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②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

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·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,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,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) 대형건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 8 조(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·보관)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를 청소하거나 위생점검을 할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 9 조(방청제의 사용제한)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급수장치에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, 부식방지에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관리상태의 점검)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는 연1회이상 저수조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) 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은 별표4와 같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 표 1)

저수조설치기준(제3조관련)

1. 저수조 벽체의 윗부분은 건축물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이상 떨어져야 하며,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
2.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여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
3. 각 변의 길이가 100센티미터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100센티미터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할 것
4.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설치하고, 바닥을 100분 1이상의 경사로 설치할 것
5. 1개의 저수조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이상 설치할 것
6. 저수조에 물이 일정수준이상 넘거나 일정수준이하로 줄었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,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
7.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·쓰레기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 띄워서 설치할 것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.
8.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레스스틸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

(별 표 2)

저수조청소업의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(제4조관련)

구 분	기 준
인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소감독원 1인 이상 · 환경기사(수질부문) · 토목기사 · 위생사 · 위생시험사 또는 화공기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,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환경 · 토목 · 화공 · 위생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분야 3년이상 경력소유자 - 청소종사자 3인 이상
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무실(16.5이상㎡) - 창고(16㎡이상)
장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공청소기(집수용): 1대 이상 - 운반차량(1톤 이상): 1대 이상 - 고압세정기 (압력 100kg/cm²이상): 1대 이상 - 배수펌프(1HP이하, 5HP이상): 각 1대 이상 - 조명기구: 1대 이상 - 살균소독 분무기: 1대 이상 - 간이 수질검사 기구(pH측정기 · 잔류염소측정기 · 색도계 · 탁도계): 각 1대 이상 - 누전차단기: 1대 이상

(별 표 3)

저수조위생점검기준(제6조제1항관련)

건축물의 명칭	
소유자(관리자)	
설 치 장 소	
건축물의 용도	공동주택 · 사무실 · 상가 · 학교 · 공장 · 병원 · 여관 · 기타
위생점검실시일	

조사사항	점 검 기 준	적 부 (○×)
1 저수조 주위의 상태	청결하며 쓰레기·오물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	
	저수조 주위에 고인물·용수등이 없을 것	
2 저수조 본체의 상태	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	
	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	
	유출관·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·밀폐되어 있을 것	
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	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	
	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	
4 저수조안의 상태	오물, 붉은 녹등의 침식물,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등이 없을 것	
	수중 및 수면에 부유	

조사사항	점 검 기 준	적 부 (○×)
4	물질이 없을 것	
	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	
5 맨홀의 상태	뚜껑을 통하여 먼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	
	점검을 하는 자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	
6 월류관·통기관의 상태	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저 기타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	
	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	
7 냄새	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	
8 맛	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	
9 색도	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	
10 탁도	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	

(별 표 1)

처분기준(제11조관련)

위반사항	처분 기준			
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(가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	사업장 폐쇄명령			
(나)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미달한 때	경 고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월	사업장 폐쇄명령
(다)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	경 고	영업정지 5일	영업정지 10일	사업장 폐쇄명령
(라) 저수조의 청소 또는 위생점검의 결과를 기록·보관하지 아니한 때	경 고	영업정지 5일	영업정지 10일	사업장 폐쇄명령
(마)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때	사업장 폐쇄명령			

비고 1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2.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을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
(앞 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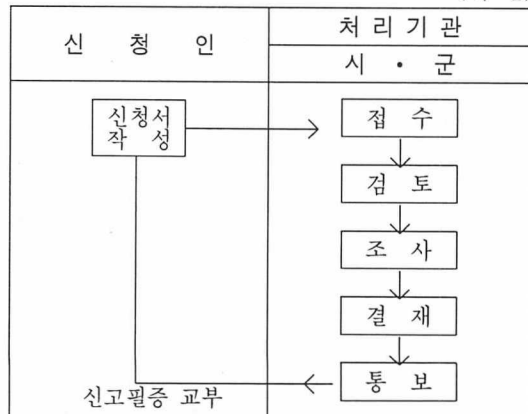
<input type="checkbox"/> 개 설 저수조청소업 신고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 경		처리기간 14일
신고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
	주 소	전 화 번 호
영업소	영업소명(상호)	전 화 번 호
	소재지	
변경연월일		
변경 내용		
변경 사유		
수도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개설(변경)을 신고합니다.		
신고인		년 월 일 (서명 또는 날인)
시장·군수 귀하		
구비서류: 1.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.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.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원본 (변경신고에 한한다.)		수수료 없 음

51318-33711 인
94. 8. 5승인

210mm×297mm
(신문용지 54g/m²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면)



(별지 제2호서식)

(앞 면)

신고번호 제 호	
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	
성 명	주민등록번호
영업소(상호)	
소재지	
<p>위 영업소는 수도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를 필하였습니다.</p>	
<p>년 월 일</p>	
시장.군수	<input type="checkbox"/> 인

51318-33811일
94. 8. 5 승인

210mm×297mm
(인쇄용지(복급)120g/㎡)

(별지 제3호서식)

<input type="checkbox"/> 휴 지 저수조 청소업 신고시 <input type="checkbox"/> 폐 지			
신고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	주소
			전화 번호
영업소	영업소명	전화 번호	
	(상호)		
	소재지		
휴지동실시연월일			
휴지기간			
휴지또는 폐지사유			
<p>수도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수조 청소업의 휴지(폐지)을 신고합니다.</p>			
<p>년 월 일</p>			
신고인		(서명 또는 날인)	
시장.군수 귀하			

51318-33811일
94. 8. 5 승인

210mm×297mm
(인쇄용지(복급)120g/㎡)

(뒷 면)

변경 및 처분사항		
신고번호 제 호		
연월일	내 용	확 인

210mm×297mm
(인쇄용지(복급)120g/㎡)

◇ 제정이유
수도법의 개정(1994. 8. 3. 법률 제4781호)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◇ 주요골자

가. 저수조 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·군수에게 신고시 갖추어야 할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하고,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(영 제4조 및 제5조).

나. 대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도록 함(영 제6조제2항).

다.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함(영 제7조).

라. 시장·군수는 연1회이상 저수조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함(영 제10조).

마.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한 영업정지등 처분기준을 정함(영 제11조 및 별표4)

(법제처 제공)